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이영실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
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
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최근 1인 가구 및 고령인구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
보유하는 가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고, 증가하는
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
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반려동물 등록제도 강화,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보호 근거 마련, 길고양이 안락사 감소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2조제2호는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월령을 2개월 이상으로 하는 안이고, 안 제10조에서는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임시보호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, 안 제21조제2항과 제3항에 길고양이의 구조, 포획, 방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